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179
----------	-------

발의연월일 : 2026. 10. 28.

발 의 자 : 권칠승 · 박균택 · 이정문
한민수 · 박정현 · 이상식
김기표 · 한준호 · 박희승
이성윤 · 허성무 · 문금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유사 또는 동일한 공동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5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반복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 영업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복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요청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3조의2(반복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 영업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u>